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40
----------	------

2024년 9월 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2일,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9월 4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최기찬 의원]

### 가. 제안이유

- 최근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는 2022년 7월 '디지털 역량 강화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2023. 4. 27.에는 국내 최초 '약자동행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 배려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장 이용에

있어 서울시에 있는 12개 파크골프장 이용 방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사전 예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익월 사용을 위한 온라인 예약은, 통상 예약신청 개방 당일에 예약이 완료되는 등 어르신들의 이용에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PC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은 온라인 예약방식만으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이용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임.
- 이는 최근 가속화된 노령화 추세 및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과도 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약자 배려 정책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시설의 이용 및 예약방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서울시 운영 한강공원 시설의 이용에 있어 노인을 포함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화·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 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시설이나 이용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고령층을 포함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화 및 현장예약 등 예약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것임.

### 나. 세부 검토 의견

#### 1) 예약방식 다양화 관련

- 현재 한강공원 시설 중 전망호텔, 난지캠핑장, 운동시설 중 축구장 등은 온라인 예약, 수영장·물놀이장 및 파크골프장<sup>1)</sup>은 현장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원 내 특정 장소를 점용해야 하는 체육·일반·문화예술 행사의 경우는 공원 안내센터에 전화(유선)로 예약하는 등 장소<sup>2)</sup>에 따라 다양한 예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15조제4항과 같이 「약자동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자<sup>3)</sup>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전화 및 현장예약 등 예약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도록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 다만, 전화예약과 현장예약이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 예약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예약과정이 민원으로 변질되어 특정 단체의 예약 점유 및

1) 미래한강본부에서 운영하는 곳은 여의도 한강 파크골프장 한 곳뿐임. - <입법검토보고> 참조

2) 한강공원 시설 전체 이용방식 현황 - [별첨 2] 참조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2. "약자동행"이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약 과정의 불투명성을 초래하여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행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있는 만큼 전체 파크골프장<sup>4)</sup>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통합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약자동행 정책”은 「약자동행 조례」 제7조<sup>5)</sup>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자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나, 지난해 4월 제정(시행)된 이후 약자 발굴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및 세부계획 수립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이를 준용할 필요도 있을 것임.

특히, ‘약자와의동행’ 추진계획의 ‘취약성 진단’<sup>6)</sup>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책적 대응 방향은 ‘디지털기기 활용역량 수준’으로써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고령층이 다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화 문의응답 및 공지를 통해 예약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야 할 것임.

## 2)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사항 추가 관련

- 안 제22조제1항제5호는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사항에 약자의 공원시설 이용 및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 방향에 상응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4) 미래한강본부 1개소, 서부공원여가센터 1개소, 서남환경 1개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개소, 자치구 10개소 등 총 14개소

5)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약자를 발굴하고 약자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6) 서울시 ‘약자와의동행’ 추진계획, 동행정책담당관-2940(2024.4.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시민 삶의 영역별 취약성 진단을 통한 중점과제 및 지표 구성(p.31~32.)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와 공정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및 공원시설의 이용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화·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방법의 다양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p>	<p>제15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와 공정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및 공원시설의 이용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화·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방법의 다양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시장은 한강공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p> <p>1. ~ 4. (생 략) <u>&lt;신 설&gt;</u></p> <p>5. (생 략) ② ~ ⑥ (생 략)</p>	<p>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p>